[對外秘]

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실행방안

2016. 4. 5.	인사총괄심의관실

I. 재편 방향 : 민사수석부장 이원화

▣ 목표

1 現 민사수석부장의 과다한 업무 경감 ⇨ 단독판사들과의 **소통 역량 강화**

2 **임시지위가처분** 담당재판부 재편 ⇨ **전문성, 신속성, 권위 제고**

▣ 내용

○ 현행

	50부(수석부)	51부
재판장	고법부장	지법부장
배석	3인 (기획법관 별도)	3인
사무분담	주요 임시지위가처분 + 비송합의(기획법관)	특정 임시지위가처분 + 계쟁물가처분
사법행정	민사부 전반	-
근무평정	민사부 전체	-
수석부장 관장 인원 (2016. 4. 1. 기준)	230명	-

○ 개편안

	50부(제1수석부)	51부(제2수석부)	52부
재판장	고법부장	고법부장	지법부장
배석	3인 (기획법관 별도)	3인	2인
사무분담	민사항소(1/3) + 비송합의(기획) + 임시지위가처분 <회사가처분 전담>	임시지위가처분 <지재가처분 전담>	계쟁물가처분 + 소제기 전 증거조사 or 민사항고
사법행정	전반	일부	-
근무평정	항소부 + 단독재판부	합의부	-
수석부장 관장 인원 (2016. 4. 1. 기준)	129명	101명	-

- **중요성이 특히 큰 임시지위가처분** 사건을 **고법부장이 재판장**인 제1수석부와 제2수석부에서 담당하고, **회사가처분 사건은 제1수석부**에서, **지재가처분은 제2수석부**에서 전담

- 일반 신청합의부인 52부는 계쟁물가처분 외에 201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전담(합의사건) ☞ 소제기 전 증거조사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사항고 사건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 검토

▣ 장점

○ 민사수석부장의 **재판업무, 행정업무 경감** ⇨ 이로써 확보한 시간을 내부 소통에 투입

○ 민사수석부장의 **관장인원도 대폭 감축** ⇨ 고법부장이 수석부장을 맡고 있는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와 균형 맞출 수 있고, 별도의 예산 지원 강화 불필요

○ **임시지위가처분** 재판의 **권위, 전문성, 신속성** 향상

[배경] 서울중앙지법에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가처분 사건이 적지 않고, 임시지위가처분의 성격상 본안재판까지 가지 않고 가처분 재판 결과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, 재판부의 권위, 전문성 등이 특히 중요함

❶ 두 재판부 모두 고법부장이 재판장 ⇨ 재판의 권위 제고

❷ 재판부별 전담사건 지정 ⇨ 회사가처분, 지재가처분 전문성 제고

❸ 임시지위가처분 전담 배석 5인 ⇨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

○ 민사수석부장이 민사항소 사건 일부를 맡음으로써 **민사단독판사들에 대한 평가와 관리 · 감독 실질화** 가능

- 형사수석부장이 형사항소 사건 일부를 맡게 된 이후, 형사단독판사들에 대한 평가와 관리·감독이 실질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

○ **고법부장 1인 증원** 효과

▣ 단점

○ 수석부장 1인 증가에 대하여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의 강화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

⇔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부 소속 판사 숫자가 너무 많고, 민사수석부장의 재판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명분이 분명하므로, 그와 같은 우려는 그리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님

○ 수석부장이 4명이나 됨 ⇨ 수석부장 간 관계 설정의 어려움

⇔ 고등부장 상호간의 기수, 서열 문제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어서 그리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님

○ **제2수석부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**지는 결과

- 지재가처분 사건 전담
- 고법부장 보임을 앞둔 합의부 재판장들에 대한 사실상의 평정권한 행사

II. 각각의 수석부장의 명칭

1. [1안] 민사수석부장, 신청수석부장

▣ 장점

○ 전례가 있음 ☞ 00'07~01'02 양○○ 민사수석부장, 강○○ 신청수석부장

⇔ 대법원장님은 당시 파산수석부장을 하면서 민사수석부장을 겸임하였으나, 실제 재판업무는 파산부 담당이었고, 민사50부는 강○○ 신청수석부장이 담당하였음

○ 둘 다 '수석부장'에 해당하므로「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」 개정 불필요

▣ 단점

○ **명칭과 실제 역할이 불일치**

- '신청수석부장'이라는 명칭은 **'신청부'에 대한 수석부장인 것으로 인식**될 수 있음 ⇨ '민사합의부'를 총괄하는 수석부장의 명칭으로는 적절하지 않음
- '신청수석부장'이라면 신청단독판사도 관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, **신청단독판사는 민사수석부장 소관**에 속하게 됨

2. [2안] 민사총괄수석부장, 민사합의수석부장

▣ 장점

○ 각각의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는 명칭임

○ 둘 다 '수석부장'에 해당하므로「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」 개정 불필요

▣ 단점

○ 민사수석부장 명칭에 '총괄'이 들어가게 되면 형사수석부장, 파산수석부장과의 관계에서 민사총괄수석부장이 항상 최선임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

⇔ '총괄수석부장'이 아니라 '민사총괄수석부장'이므로 기우에 불과

○ '총괄'이라는 표현에 의해 두 수석부장 간 서열이 드러남

3. [3안] 민사제1수석부장, 민사제2수석부장

▣ 장점

○ 검찰의 제1차장, 제2차장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적 익숙한 명칭임

○ 둘 다 '수석부장'에 해당하므로「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」 개정 불필요

▣ 단점

○ 두 수석부장 간 **서열이 부각됨**

- 제2수석부장이 합의부 재판장에 대하여 사실상 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2수석부장도 고참 고법부장으로 보임할 경우, 더욱 바람직하지 않음

○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한다면 제1, 제2를 붙여도 무방할 것이나(예: 제1심의관/제2심의관), 재판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은 측면

4. [4안] 민사항소(단독)수석부장, 민사합의수석부장

▣ 장점

○ 명칭만으로도 각각의 관장 영역을 짐작할 수 있음

○ 두 수석부장 간 서열이 부각되지 않음

○ 둘 다 '수석부장'에 해당하므로「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」 개정 불필요

▣ 단점

○ '민사항소단독수석부장'은 명칭이 너무 길고, '민사항소수석부장'이라고만 할 경우에는 민사단독 파트가 누락된 것으로 보일 수 있음

○ 민사항소(단독)수석부장은 아래에서 보듯이 재정합의결정, 민사부 홍보업무 지휘, 민사부 사무분담 1차 분류 등 민사부 사법행정 총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, 이러한 기능 내지 역할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음

III. 각각의 수석부장 간 권한 및 역할 분배

○ 아래에서는 일단 '민사총괄수석부장', '민사합의수석부장'이라는 명칭을 사용함

1. 법원장 권한대행

▣ 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장판사,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함(법원조직법 §26④ 등)

▣ 민사수석부장 이원화 시 서울중앙지법에는 **4명의 수석부장**이 존재하게 되는바, 이 중 **선임부장이 법원장 권한대행**을 하게 될 것임

2. 사건배당 주관

▣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이 주관하나,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(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」 §9①)

▣ 민사총괄수석부장은 민사항소부 및 민사단독재판부, 민사합의수석부장은 민사합의부 관련 사건배당 주관하게 될 것임

▣ 민사단독사건 중 중요사건 등 **'재정합의 대상사건'에 대하여 재정결정부 회부를 할 수 있는 '사건배당 주관자'**(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」 §12①) 및 **'재정결정부 재판장'** 등은 **민사총괄수석부장**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☞ **서울중앙지법 내규에 명시**할 필요

3. 규칙, 내규상 각종 위원, 위원장 등

▣ 법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

○ 위원장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됨(법무사규칙 §47②)

○ **민사총괄수석부장**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⇨ "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총괄수석부장판사"라는 규정 추가

▣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

○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혹은 선임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함(「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」 §3①)

○ **민사총괄수석부장**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⇨ "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총괄수석부장판사"라는 규정 추가

▣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

○ 각급법원 위원회의 장은 각급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또는 선임법관으로 함(법원민원 처리 내규 §34②)

○ **4명의 수석부장 중 선임부장**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, 만약 민사부 수석부장이 담당해야 한다면 **민사총괄수석부장**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⇨ "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총괄수석부장판사"라는 규정 추가

▣ 홍보업무 지휘

○ 각급법원의 공보관은 해당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의 지휘를 받아 홍보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원장을 보좌함(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 §6②)

○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은 **민사총괄수석부장**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

당함 ⇨ "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의 경우는 민사총괄수석부장판사"라는 규정 추가

▣ 해외연수선발위원회 위원

○ 해외연수선발위원회 위원 중 '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인'이 있고, 이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함(「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」 §5의2 ②,③)

○ 당연직이 아니라 **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직**이므로 **내규 개정 불필요**

4. 내부 소통, 평정 초안 작성, 사무분담 초안 작성 등

▣ 민사총괄수석부장은 민사항소부 및 민사단독재판부, 민사합의수석부장은 민사합의부 담당

▣ 다만, 사무분담 초안 작성 관련하여 **민사항소부, 민사합의부, 민사단독재판부에 관한 1차적인 분류는 민사총괄수석부장**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

⇨ 내규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의 역할 배분의 문제일 뿐임

Ⅳ. 시행시기

1. [1안] 2016년 8월

▣ 장점

○ 서울중앙 민사단독판사 조기에 장악 ⇨ **2016년 하반기 단독판사회의 제어**

- 2016년 하반기에 '희망 최우선'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관한 판사회의 개최 예상

○ 2016. 7.~8. **이○○ 대법관 후임 제청 후 고법부장 이상 소폭 인사 실시**할 경우 자연스럽게 시행 가능

⇔ 외부 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될 경우 인사요인이 없을 수 있음

○ 복귀 법원장 등 사법연구로 인하여 **2016년 하반기 서울고등 고법부장 1인 과원** 가능성 있는바, 이 문제 **해소** 가능

- 2016년 복귀 법원장 등 사법연구 : 상반기 4명, 하반기 3명
- 민사수석부장 이원화 시 서울중앙 고법부장 공석 1개 발생

▣ 단점

○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시점에 민사수석부장이 2인으로 늘어날 경우 민사단독 판사들에 대한 장악 시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

⇔ 사전에 법률신문을 통해 서울중앙 민사부의 비대화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 검토

2. [2안] 2017년 2월

▣ 장점

○ 고법부장 이상 정기인사 때 시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움

○ 2016년 하반기 파산법원 신설법안 통과, 2017년 3월 신설 가정 ⇨ 서울중앙지법 3인 수석부장 유지

- 파산수석부장 폐지
- 민사총괄수석부장/민사합의수석부장/형사수석부장

▣ 단점

○ 단독판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사법행정권 도전에 대하여 대응시기를 놓칠 우려 ⇨ 대법원장님 임기 말 리더십 타격 예상

- 2016년 하반기에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관한 판사회의 개최 예상